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
기기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행정안전위원장에게, 2008. 11. 28.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1. 제24조 제2항은 그 표현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수정하고,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제24조 제4항은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제24조 제5항은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를 금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24조 제7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는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에게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급증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숫자와 공공□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시 예상되는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등과 같은 사전적□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

I. 권고 배경

최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공공□민간영역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 모든 영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급증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등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2008. 11. 28.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영역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을 입법 발의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위 법률안의 내용 중에서 영상정보처리기와 관련된 규정들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하였고 주문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Ⅱ.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37조 제2항, 제18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제2항

Ⅲ. 판단

1.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장소 제한(법률안 제24조 제2항)

법률안 제24조 2항 본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문맥상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를 금하는 것인지, 위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을 금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그 내□외부를 불문하고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조항의 단서조항은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구금 또는 보호시설에서는 본문에 규정된 장소들에도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2005. 8. 17 법무부예규 제731호) 제5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5헌마137□247□376, 2007헌마187□1274(병합))에서 다수재판관(5인)은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법률안 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은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내판 설치 등(법률안 제24조 제4항)

법률안 제24조 제4항은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3항이 CCTV에 대한 안내판 설치 시 안내판에 기재해야 할 내용 등을 직접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완화된 규정이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도록 최소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은 반드시 안내판에 기재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하위법령이 아닌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음성녹음 기능의 규제(법률안 제24조 제5항)

법률안 제24조 제5항은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녹음기능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행정안전부가 2008. 2. 에 실시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2,778대의 CCTV 중 음성녹음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CCTV가 171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에서조차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이 드러나 사회적인 충격을 준 바 있다. 음성녹음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며, 특히 민간부문에서는 그동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규가 부재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음성녹음 기능

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타인의 대화가 녹음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로 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커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24조 제5항은 원천적으로 음성녹음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민간위탁 운영의 적절성(법률안 제24조 제7항)

법률안 제24조 제7항은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방법용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요원의 자격 및 운용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기도 하며, 심지어 민간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이들 모니터링 요원의 주된 업무가 범죄 예방 및 채증 활동이어서 민간 모니터링 요원은 거동수상자에 대한 고배율 확대 및 회전기능 사용 등 투망형태로 추적이 가능한 범죄예방 모니터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 사생활 유출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률안 제24조 제7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위탁 규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규율하여 방법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사전적□예방적 관리방안의 필요성

2009. 4.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약 24만대 정도로 2008년에 비하여 53% 급증했고, 설치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민간부문 CCTV는 약 250~300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술은 줌기능의 향상, 디지털화, 소형화, 고화질화, 개인화, 네트워크화, 야간투시, 얼굴 및 모션인식, 투망형 추적 등의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반면에 설치 비용은 점점 낮아져 앞으로도 계속 증설될 것이라 예상된다. 법률안과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리할 경우 관리 대상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최소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사전적 규제 장치 없이 사후적인 관리만으로 과연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급증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숫자와 공공□민간부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시 예상되는 업무과중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등과 같은 사전적□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09. 12. 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불참>